

## ◎문화재청공고 제2023-30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문화재청장

###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 2. 공고사항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1) 한자 : 扶安 蝸島 鎮里 大月褶曲

2) 영문 : Daewol recumbent fold in Jin-ri, Wido Island, Buan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1, 공유수면

라. 지정사유

1)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지층들이 퇴적과정 중 독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횡와습곡이며, 백악기 이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일반적인 대형 습곡과 달리 백악기 이후에 만들어진 습곡으로 만들어진 배경이나 시기, 구조 등이 지질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음.

2) 뚜렷한 지층 경계로 이루어진 지름 40m 가량 횡와습곡의 거대한 원형구조가 주위 환경과 어루어지는 경관이 매우 우수함.

마.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바. 문화재지정구역 : 1필지, 13,335㎡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 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mailto:laando@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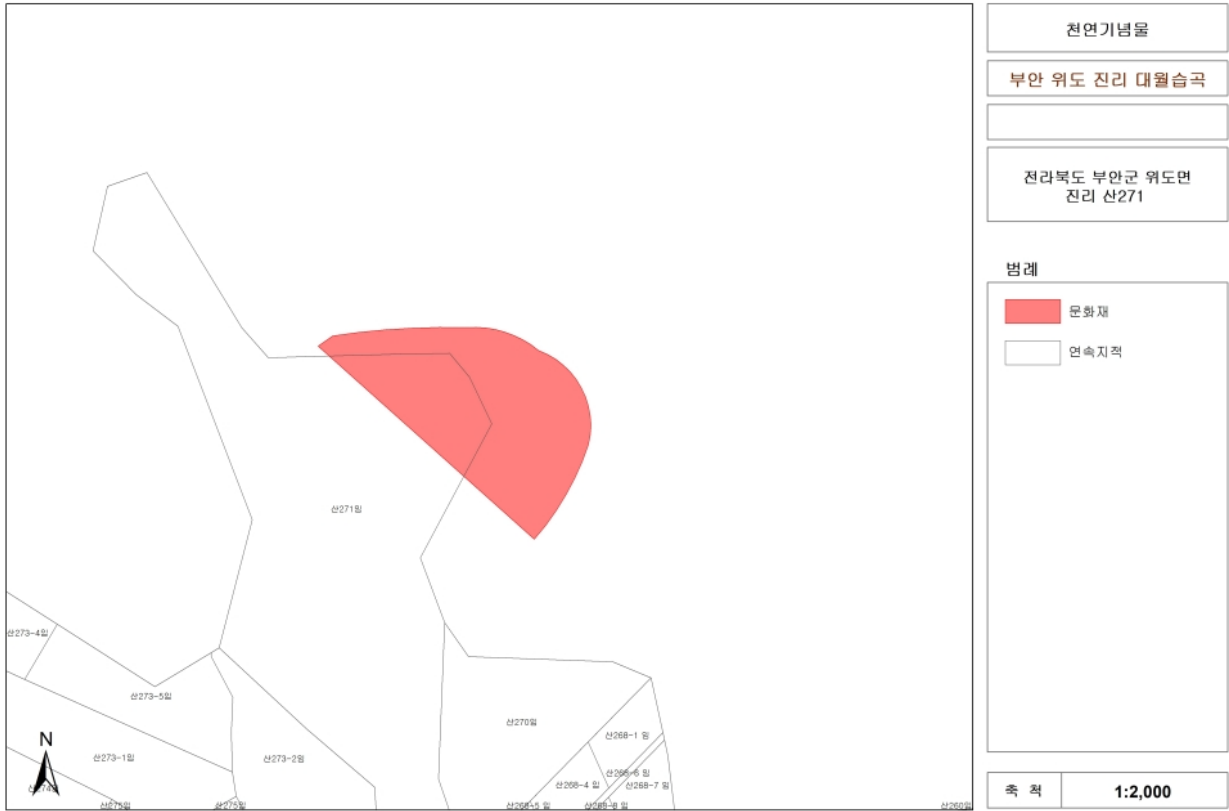
나. 지방자치단체

- 1)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 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전자메일 [ycn0123@korea.kr](mailto:ycn0123@korea.kr)
- 2)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 화 063-580-4265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전자메일 [ryejin324@korea.kr](mailto:ryejin324@korea.kr)

**붙임**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부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sup>2</sup> )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     | 성명  | 주소      |
|    | 계          |      |    | 48,496              | 13,335 |     |         |
| 1  | 부안군 위도면 진리 | 산271 | 임  | 48,496              | 4,162  | 김○○ | 서울시 은평구 |
| 2  | 공유수면       |      |    |                     | 9,173  | 국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